

2026년 지역전시 활성화 <유형1. 미술콘텐츠-지역 전시공간 매칭 지원> 전시공간 모집 공모요강매칭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우수 미술콘텐츠와 지역 전시공간의 매칭 지원으로 미술콘텐츠 유통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<유형1. 미술콘텐츠-지역 전시공간 매칭 지원> 사업을 추진합니다. 동 사업에 참여할 지역 전시공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 공모개요

- (공 모 명) 2026년 지역전시 활성화 <유형1. 미술콘텐츠-지역 전시공간 매칭 지원>
- (모집기간) 공고일 ~ 4월 6일(월) 17:00
- (사업대상) 서울 외 지역에 공공·민간 전시공간을 보유한 단체
- (지원규모) 총 52.5억원 내외 / 5천만원 ~ 3.5억원 내 선택, 자부담 10%
- (지원조건)

필수조건				
전시공간 운영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 외 지역에 자체 보유 전시공간이거나 위탁 운영 전시공간이 있는 단체 (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) - e나라도움 운용(교부 신청, 집행.정산, 회계검증)이 가능한 단체 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 단체 - 총 국고보조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성 자부담금으로 편성 및 운용이 가능한 단체 			
전시면적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내를 기준으로 본 사업에서 지정하는 각 전시공간 면적 이상의 전시공간을 보유한 단체 - 대상, 공간면적별로 매칭 가능한 미술콘텐츠 규모 상이 			
	지원 대상	미술콘텐츠비	전시공간 필요 면적	신청 가능 국고보조금
문예회관 제외공간	40,000,000원	최소 50평(165㎡) 이상	50,000,000원 이상	10% 이상
	50,000,000원	최소 80평(264㎡) 이상	62,500,000원 이상	
	60,000,000원	최소 100평(330㎡) 이상	75,000,000원 이상	
	70,000,000원	최소 150평(495㎡) 이상	87,500,000원 이상	
*문예회관	40,000,000원	최소 50평(165㎡) 이상	50,000,000원 이상	10% 이상
	50,000,000원	최소 80평(264㎡) 이상	62,500,000원 이상	
	60,000,000원	최소 100평(330㎡) 이상	75,000,000원 이상	
	70,000,000원	최소 150평(495㎡) 이상	87,500,000원 이상	
*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록된 문예회관 기준				
예산편성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술콘텐츠비는 총 국고보조금의 80%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최대 3.5억 원까지 신청 가능 - 총 국고보조금의 10% 이상을 현금성 자부담으로 편성.지출하여야 함 - 최종 확정된 콘텐츠비는 변경 불가 			
사업운영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설치.철수.휴관일 제외 사업기간 내 연속 30일 이상 전시 개최 - 전시 개최기간 동안 전시장 지킴이 배치, 운영, 전시 홍보 진행 			
권장사항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료전시 권장, 입장료 수익금 발생 시 전시 관련 자체 사업에 활용 가능(사전 계획서 승인 필수) - 고유번호증 단체는 유료 전시 수행 시, 해당 전시의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활용 				

2 사업내용

- (매칭가능 미술콘텐츠 목록) <http://115.68.193.117:8888/>
- (사업기간) 2026년 5월 4주 ~ 2026년 11월 (예정)
- (추진일정)

3월 3주~4월2주	4월 3주~	4월 5주~	5월~11월
전시공간 공모	매칭 및 발표	OT 및 교부	사업 운영

*추진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- (사업절차)

1. 전시공간 모집			
<보조사업자> 전시공간	↔ 매칭 사전협의	<용역계약자> 미술콘텐츠 제공자	<보조사업자> 전시공간 → E나라도움 지원신청
2. 미술콘텐츠 매칭			
<센터>	① 전시공간 지원조건 행정 검토 ② 매칭신청서 전달	<용역계약자> 미술콘텐츠 제공자	매칭결정서 전달 <센터>
* 본 사업의 총 지원 예산을 초과할 경우, 콘텐츠 매칭 건수 조정이 진행될 수 있음			
3. 전시개최·사업운영			
① <보조사업자> 전시공간	↔ 계약체결	<용역계약자> 미술콘텐츠 제공자	
② <보조사업자> 전시공간	→ 교부신청	<센터>	→ 보조금 교부 <보조사업자> 전시공간
③ <보조사업자> 전시공간	→ 미술콘텐츠비 선급 지급	<용역계약자> 미술콘텐츠 제공자	↔ 전시개최 <보조사업자> 전시공간
④ <용역계약자> 미술콘텐츠 제공자	→ 용역결과보고 제출	<보조사업자> 전시공간	→ 미술콘텐츠비 잔금 지급 <용역계약자> 미술콘텐츠 제공자
⑤ <보조사업자> 전시공간	→ 총사업비(국고보조금, 자부담) 최종 집행·정산·회계검증	<센터>	
4. 역할구분			
전시공간 (보조사업자)	- e나라도움 보조사업 운영 (사업신청, 집행, 회계검증) - 전시 공간제공/관리 - 전시장 지킴이 운영 / 전시홍보	미술콘텐츠 제공자 (용역계약자)	- 미술콘텐츠 제공 - 전시 기획·설치·철수 - 오프라인 전시 해설 운영 - 전시 홍보

3 전시공간 모집 내용

○ (모집대상)

지원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 외 지역에 자체 보유 전시공간이거나 위탁 운영 전시공간이 있는 단체(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) - e나라도움 운용(사업신청, 교부, 집행, 정산)이 가능한 단체 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- 총 국고보조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성 자부담금으로 편성 및 운용이 가능한 단체 - 전시면적 최소 50평(약 165㎡) 이상의 전시공간을 보유한 단체
지원 불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전시공간으로 중복 지원 불가 -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내 타 공모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 - 등록 미술콘텐츠가 기개최된 전시공간에서 재개최 불가 - 카페, 호텔, 병원, 쇼핑몰 등 상업시설은 지원 불가(갤러리 제외) - 상업시설 내 갤러리, 미술관으로 운영되는 공간은 지원 가능하며 임시 전시공간(로비, 복도) 등은 지원 불가 - 미술콘텐츠의 운송·파손·보안 등이 우려되는 공간 등은 공간으로 지원이 불가함 - 국립 미술관·박물관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기업(단체) -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-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,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-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 - 동 사업으로 보조금, 지방보조금, 중앙문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 수령 단체 -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 -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- 법인·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- 기 선정된 지원사업의 정산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-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 임을 파악할 수 없는 자(단,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) - 기재부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 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 - 문체부 「국고보조금 관리지침」 제7조 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-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(불공정행위의 금지)로 처벌된 단체 및 개인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신고를 받은 자 또는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단, 의결과정 관여 없이 단순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기간 경과 시 제외 -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○ (전시면적 조건) 대상, 공간 면적별로 매칭 가능한 미술콘텐츠 규모 상이

지원 대상	미술콘텐츠비	전시공간 필요 면적	신청 가능 국고보조금	자부담금
문예회관 제외 공간	40,000,000원	최소 50평(165㎡) 이상	50,000,000원 이상	10% 이상
	50,000,000원	최소 80평(264㎡) 이상	62,500,000원 이상	
	60,000,000원	최소 100평(330㎡) 이상	75,000,000원 이상	
	70,000,000원	최소 150평(495㎡) 이상	87,500,000원 이상	

지원 대상	미술콘텐츠비	전시공간 필요 면적	신청 가능 국고보조금	자부담금
문예회관	40,000,000원	최소 50평(165㎡) 이상	50,000,000원 이상	10% 이상
	50,000,000원		62,500,000원 이상	
	60,000,000원	최소 100평(330㎡) 이상	75,000,000원 이상	
	70,000,000원	최소 150평(495㎡) 이상	87,500,000원 이상	

ex) 전시공간 면적 50평인 문예회관이 신청하는 경우, 미술콘텐츠비는 50,000,000원 이하 항목중 선택 가능
ex) 전시공간 110평인 경우, 미술콘텐츠비 60,000,000원 이하 항목중 선택 가능

○ (사업비 지원내용) 사업비=국고보조금+자부담

- 국고보조금 : 5천만 원 ~ 3.5억 원 내 선택
- 자부담 : 총 국고보조금의 10% 이상 e나라도움 등록 후 운용
- 사업비 지원 항목

목	세목	지급유형 및 단가	예산편성 불가능	
인건비 (110)	기타 인건비 (0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전시장지킴이 사례비 -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등 지급 고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내부인력 활용 시 비용처리 불가 ● 근무시간, 요일 상관 없이 3개월 연속 동일인 사용 불가 	
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시급 (1시간) 10,320원</td> <td>일급 (8시간) 82,560원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 산출액은 원천세, 사회보험 등 포함 > 비용 산정은 근로기준법 준수 		시급 (1시간) 10,320원
시급 (1시간) 10,320원	일급 (8시간) 82,560원			
유영비 (210)	일반용역비 (1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미술콘텐츠 제공자 용역비 <table border="1"> <tr> <td>미술콘텐츠 4.5-6.7천만 원 정액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 총 국고보조금의 80% 이내 > 등록 미술콘텐츠는 공고문 링크 참조 	미술콘텐츠 4.5-6.7천만 원 정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콘텐츠비 내 상세내역과 일반용역비 산출내역 중복 불가
		미술콘텐츠 4.5-6.7천만 원 정액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일반용역비 - 전시 홍보, 광고, 체험프로그램 운영대행, 영상제작 대행 등에 필요한 대행용역비 - 기타 전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행용역비(협의) - 기타대행용역비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의 필요 				

*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편성 가능하며,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사업비로(국고보조금+자부담) 편성·집행이 불가하므로, 순수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함(면세, 고유번호증 보유 사업자는 부가세 편성 가능)

<사업비 지원 불가항목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정단체/기업 경상비 : 소속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구입, 공과금, 시스템 구축비 등 - 자본적 경비 : 지원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구입 등 - 업무추진비 : 간담회 등을 위한 식음료비, 업추비 등 - 전시 준비비 : 장소 답사, 준비 등을 위한 교통, 숙박, 유류대 등 - 기타 : 전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, 보조금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 	

4 미술콘텐츠 매칭방법

○ (매칭조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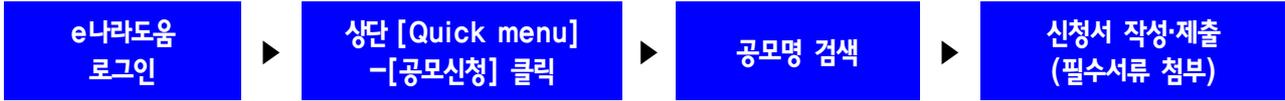
지역	- 같은 소재지(사군 기준)의 전시공간과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매칭 불가 - 신청 공간에서 기존에 전시했던 이력이 없는 미술콘텐츠와 매칭 가능
미술 콘텐츠 매칭	- 최대 4곳의 서로 다른 제공자와 최대 4건의 미술콘텐츠를 매칭 가능 - 하나의 전시공간에는 1건의 미술콘텐츠만 개최 가능(파티션으로 내부를 나누더라도 동일하게 1개의 공간으로 간주) -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전시공간을 보유 단체는 전시기간 내 각각의 전시공간에서 미술콘텐츠 동시 개최 가능
미술 콘텐츠 조정	- 등록 미술콘텐츠의 내용, 규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을 필수로 득해야 함(콘텐츠의 내용은 공모신청기준 70% 이상 유지 필수)
기타	- 공모기간 내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사전 매칭 협의 권장 - 전시공간·미술콘텐츠 제공자 중복 지원 불가 - 본 사업의 총 지원 예산을 초과할 경우, 콘텐츠 매칭 건수 조정이 진행될 수 있음

○ (매칭방법 및 발표)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(3월 3주~4월 1주) 미술콘텐츠 공개 및 매칭 사전 협의	- 선정된 미술콘텐츠 리스트 공개 - 전시공간은 매칭을 희망하는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매칭 관련 사전 협의 (* 사전 협의는 최종 매칭이 아님)
(4월 1주) 매칭신청서 작성 및 제출	- 전시공간은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협의한 사항을 기반으로 매칭신청서 작성 - 전시공간은 매칭신청서를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
(4월 2주~4월 3주) 행정 검토	- 센터는 전시공간의 제출서류 일체를 검토 후 조건 충족 여부, 서류 누락 등을 확인 후 행정검토 진행
(4월 4주~5월 1주) 매칭 결정, 결과발표	- 센터는 전시공간 매칭신청서를 해당 미술콘텐츠 제공자에게 전달 -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전시공간에서 제출한 매칭신청서를 검토 후 최종 매칭 결정·취소 -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내 최종 매칭결과 발표

5 공모접수

- (접수기간) 공고일 ~ 2026년 4월 6일(월) 17:00
 - 기한 엄수, 해당 기한 이후 접수된 건은 행정 검토 대상에서 제외
- (접수방법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한 접수



- (필수 제출서류)
 - 필수서류 누락, 지원조건 불충족, 날인 누락, 신청서 미작성/양식변경, 내용 미흡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단체에 있음
 - 접수기간 종료 이후 제출서류의 반환 및 수정 등은 일체 불가

순번	제출서류	형식
1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(e나라도움에서 작성·제출)	-
2	[양식] 매칭신청서	HWP
3	[붙임1] 전시공간 보유·위탁 증빙서류	PDF
4	[붙임2]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	
5	[양식] [붙임3]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	
6	[양식] [붙임4]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	
7	[양식] [붙임5]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	
8	[양식] [붙임6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9	[양식] [붙임7]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약약서	

○ (유의사항)

- 수치 작성 시 이상·이하 등의 추정치 작성 불가 예) 오천명(X), 오천명 이상(X), 5,000명(O)
- 신청주체는 사업 신청·운영 간 사업체 유지 필수, 휴·폐업 시 지원이 취소됨
- 콘텐츠비 지급에는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며,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지급 가능함 /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(보조사업 관련 계약)에 따라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함

-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경쟁성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,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 초과될 경우 조달청장, 지방자치단체장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
- 단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*에 따라 계약체결 시 5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함

*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

*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

*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

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

- 콘텐츠비 지급은 선금-잔금의 형태로 2회 분할 지급함
- 전시공간 제공자는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콘텐츠비만 거래할 수 있으며, 그 외 기타 인적·물적 거래를 할 수 없음
- 심의를 통해 선정된 미술콘텐츠에 한해 전시공간 제공자와 매칭 가능하며, 콘텐츠비는 전시공간 제공자가 용역비의 형태로 미술콘텐츠 제공자에게 지급함
- 신청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고,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
- 부정수급 행위 시 보조금법 제31조, 제33조, 제36조, 제40조, 제41조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
-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기획자, 비평가 등 지급 시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
-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
- 2천만원 초과 대행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(누리장터) 이용
- 사업비 통장은 타 사업 및 개인 지출건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- 사업 실무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오리엔테이션, 성과공유회 등 참석
- 언론 등의 홍보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의무교육 수수료 및 서약서 제출
- 지원사업 관련 홍보물 일체에 후원 표기(문화체육관광부, 예술경영지원센터 순)
- 전시기간 중 관람객 대상 만족도조사 필수 진행 및 결과 제출 (최소 200명 이상 참여)
- 전시기간 중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시 협조
- 시각예술시장조사*(구)미술시장실태조사) 설문 응답 필수
- 전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
-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, 변경, 정산, 실적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- 총사업비는 반드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·검증보고서 수령 필수
- 유료전시 진행시, 수익금 활용 계획서 제출 필수이며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전시 관련 자체 사업에 활용 가능
- 유료전시 진행 단체가 비영리 유형인 경우, 입장료 수입이 자부담을 초과할 경우 해당 전시의 실비 변상적 비용으로 활용 필수
- 제출서류는 반환·수정 불가, 서류누락 및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주체에게 있음
- 작성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
- 신청내용과 실제 운영내용이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사업지원 축소 혹은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내용 불이행 시 사업 제외 및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사업비 편성 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편성은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
- 중간정산 시 자부담 전액 소진 및 회계검증 완료를 원칙으로 함
- 자부담을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
-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총사업비에서 지출 불가하므로, 반드시 공급가액으로만 편성하여야 함
- 총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사용 가능, 사전 및 사후 활용은 불인정함
- 국고보조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, 사업기간 동안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 해지를 금지함
- 지원기간 동안 사업체는 유지 해야하며, 기간 내 휴폐업 시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내 행정규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
- 사업 운영은 보조금법, 예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
- 저작권·특허권·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·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사업 제외될 수 있음
-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「예술인복지법」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,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(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)하거나,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,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무용품 구매 또는 인쇄·광고 제작 등이 포함되는 경우,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약자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중증장애인생산품,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를 권장함
(사무용품: 복사용지, 토너 등 각종 사무용품 / 인쇄·광고: 판촉물·기념품, 인쇄물, 현수막·배너 제작 등)

여성기업 공공구매 사이트(wow.wbiz.or.kr),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사이트(dream365.debc.or.kr),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구매 사이트(goods.go.kr),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사이트(sepp.or.kr/intro)

6 문의처

○ (사업문의)

- (이메일) koreaarts2026@gmail.com
- (전화) 070-7575-3102, 070-7575-3244

* 문의 가능시간 : 평일(월~금) 10:00~17:00 /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